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제18조 관련)

등급	장애 상태의 정도	보상금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영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이하 “사망자보상금”이라 한다)의 16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제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 발을 발목 발바닥뼈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제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11.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제4급	1. 한 눈이 실명(시력 또는 광각을 잃은 것을 말한다)되거나	사망자보상금의 16

	나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 한 발을 발목 발바닥뼈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14.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 또는 한 쪽 신장을 잃은 사람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5급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 시야(視野)협착 또는 시야이상 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6급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흉골·늑골·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이 못 쓰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게 된 사람

18.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20.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21. 그 밖에 제1급부터 제6급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상으로서 14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 부상을 당한 사람